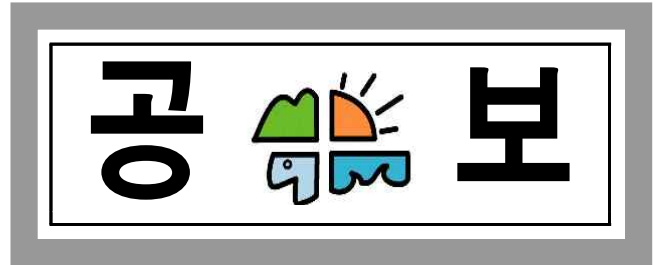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301호 2020년 12월 28일(월)

조 례

○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규 칙

○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28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801호

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지원·평가하는 경우 명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속초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속초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명장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명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관련업무 담당과장, 속초시의원 1명, 신청직종별 3명

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1.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원

2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4조)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4조)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28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483호

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5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5조) 중 “별지 제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